

##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※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18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오전 9시

2. 장 소 :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6길 123(봉암동) 마산본사 강당

3. 회의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,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

나. 부의안건

제1호 의안 : 제12기(2024.01.01 ~ 2024.12.31)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) 및

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(별첨1.)

제2-1호 : 정관 제12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변경의 건

제2-2호 : 정관 제44조(이익배당) 변경의 건

제2-3호 : 정관 제44조의2(분기배당) 변경의 건

제2-4호 : 정관 부칙 제1조(시행일) 변경의 건

제3호 의안 :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(후보자 : 고석민)(별첨2.)

제4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(후보자 : 임안식)(별첨3.)

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(별첨4.)

제6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(별첨5.)

4.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
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#### 5. 경영참고사항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출 및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.

※ 엘케이삼양(주) 홈페이지 주소 : <https://www.lksamyang.com>

#### 6.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

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(상법 제368조의4)를 도입하였습니다.

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가.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: <https://vote.samsungpop.com>

나. 전자투표 기간 : 2025년 03월 16일 오전 9시 ~ 2025년 03월 25일 오후 5시

※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
다.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, 카카오페이,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
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(삼성증권 전자투표서시브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)

#### 7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가. 직접행사 : 본인 신분증, 주주총회참석장

※ 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만이 인정되며,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대리행사 : 대리인 신분증, 주주총회참석장, 위임장, 위임인의 인감증명서

※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

- 위임인 성명, 주민등록번호(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)

- 대리인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
- 위임인 인감 날인

#### 8. 기타사항

금기 총회시에는 주총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3월 11일

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6길 123(봉암동)

엘케이삼양 주식회사

대표이사 구본욱, 신승열 (직인생략)

별첨1. 정관 신규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 경 (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제 12 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</b><br>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<br>②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<br>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3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| <b>제 12 조 (기준일)</b><br>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<br>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br>③ (삭 제)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등의 전자등록으로 인한 문구 정비 |
| <b>제44조 (이익배당)</b><br>① ~ ② (생 략)<br>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<br>④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제44조 (이익배당)</b><br>① ~ ② (좌 동)<br>③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br>④ (좌 동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이익배당기준일 등 문구 정비   |
| <b>제 44 조의2 (분기배당)</b><br>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, 6월, 9월의 말일(이하 “분기배당 기준일”이라 한다)의 주주에게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.<br>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.<br>③ ~ ④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제 44 조의2 (분기배당)</b><br>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, 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.<br>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br>③ ~ ④ (좌 동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분기배당기준일 등 문구 정비   |
| <b>부 칙</b><br><b>제1조 (시행일)</b><br>① ~ ⑪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부 칙</b><br><b>제1조 (시행일)</b><br>① ~ ⑪ (좌 동)<br>⑫ 이 정관은 2025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칙 시행일 문구 정비                   |

별첨2. 신규 기타비상무이사(후보자 : 고석민)에 관한 사항

가. 후보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추천인·최대주주와의 관계·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

| 후보자성명     | 생년월일       | 사외이사<br>후보자여부 | 감사위원회<br>위원인 이사<br>분리선출 여부 | 최대주주와의<br>관계 | 추천인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
| 고석민       | 1970.02.12 | 해당없음          |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| 임원           | 이사회 |
| 총 ( 1 ) 명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|

나. 후보자의 주된직업·세부경력·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
| 후보자성명 | 주된직업              | 세부경력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당해법인과의<br>최근3년간 거래내역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기간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고석민   | LK보험중개(주)<br>대표이사 | 1993~2003 | 럭키화재 투자관리부          |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2003~2015 | LIG손해보험 경영전략팀장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2015~2018 | LK보험중개(주) 본부장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2018~2022 | LK보험중개(주) 부대표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2018~현재   | (주)LK 부대표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2022~현재   | LK보험중개(주) 대표이사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2024~현재   | LK자산운용(주) 기타비상무이사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2025~현재   | (주)LK투자파트너스 기타비상무이사 |                      |

다.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·부실기업 경영진 여부·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
| 후보자성명 | 체납사실 여부 |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|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고석민   | 해당없음    | 해당없음        | 해당없음         |

별첨3. 중임 감사(후보자 : 임안식)에 관한 사항

가. 후보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추천인·최대주주와의 관계

| 후보자성명     | 생년월일       | 최대주주와의 관계 | 추천인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임안식       | 1954.12.20 | 감사        | 이사회 |
| 총 ( 1 ) 명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

나. 후보자의 주된직업·세부경력·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
| 후보자성명 | 주된직업           | 세부경력      |                  | 당해법인과의<br>최근3년간 거<br>래내역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        | 기간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임안식   | 법무법인 매헌<br>변호사 | 2004~2005 |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      |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| 2005~2016 |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변호사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| 2016~2017 | KB손해보험(주) 상임법률고문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| 2017~현재   |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| 2019~현재   | LK삼양(주) 감사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| 2022~현재   | (주)LK 감사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다.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·부실기업 경영진 여부·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
| 후보자성명 | 체납사실 여부 |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|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임안식   | 해당없음    | 해당없음        | 해당없음         |

별첨4. 이사의 수·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

(당기)

|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이사의 수(사외이사수)  | 6명(2명)   |
|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| 2,500백만원 |

(전기)

|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이사의 수(사외이사수) | 7명(3명)   |
|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| 779백만원   |
| 최고한도액        | 2,500백만원 |

별첨5. 감사의 수·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

(당기)

|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|
| 감사의 수         | 1명     |
|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| 100백만원 |

(전기)

|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|
| 감사의 수       | 1명     |
|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| 24백만원  |
| 최고한도액       | 100백만원 |